

광주고등법원 2020. 4. 22 선고 2019재나40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재판경과

광주고등법원 2020. 4. 22 자 2019재나40 결정

광주고등법원 2018. 12. 7 선고 2018나23352 판결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8. 6. 29 선고 2017가합150 판결

전문

원고(재심원고), 항소인 A

피고(재심피고), 피항소인 1. B

2. C

변론 종결 2020. 4. 1.

판결 선고 2020. 4. 22.

제1심판결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8. 6. 29. 선고 2017가합150 판결

재심대상판결 광주고등법원 2018. 12. 7. 선고 2018나23352 판결

주문

1. 원고(재심원고)의 재심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항 소 취 지 및 재 심 청 구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재심대상판결을 취소한다. 피고(재심피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들은 연대하여 원고(재심원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에게 10만 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등

가. 전제된 사실관계

- 1) 목포시 E 대 80평, F 대 40평 및 위 각 토지 지상 목조와즙 평가건 주택 건평 7평, 부속건물 목초초즙 평가건 주택 건평 16평(이하 '이 사건 대지 및 건물'이라 한다)은 원고의 아버지인 G의 소유였다.
- 2) G이 1964. 11. 6. 사망하여 그의 처인 H와 자녀들인 I, J 및 원고가 공동상속인이 되었다.
- 3) I는 G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관계서류를 위조하여 이 사건 대지 및 건물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1965. 5. 28. 접수 제19890호로 I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 4) 피고 B의 남편이자 피고 C의 아버지인 K는 1969. 3. 18. I로부터 이 사건 대지 및 건물을 360,000원에 매수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K는 이 사건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대지 및 건물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1969. 5. 1. 접수 제2963호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친 후 그 무렵부터 20년 이상 이 사건 대지 및 건물을 점유하였다.
- 5) 목포시 E 대 80평, F 대 40평은 1984. 6. 12. E 대 120평으로 합병되었다가, 같은 날 L 대 90평과 M 대 30평으로 분할되었고, 위와 같이 분할된 L 대지는 1985. 11. 11. L 대 77㎡와 N 대 221㎡로 분할되었다.
- 6) 원고는 K를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94가단26764호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원고는 위 소송의 청구원인으로 "I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관계

서류를 위조하여 마쳐진 것으로 원인무효의 등기이고, 이에 터잡은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 역시 원인무효의 등기이다."라고 주장하였는데, 위 법원은 원고의 청구원인을 인정하면서도 "K가 이 사건 대지 및 건물을 시효취득 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이다."라는 K의 항변을 받아들여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그의 처가 병원에 입원하여 수술비 등 입원비용을 마련하느라 몹시 곤궁한 처지였는데, K가 시가 3,000,000원 상당의 이 사건 대지 및 건물을 불과 360,000원에 매수한 것이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이거나, K는 이 사건 대지 및 건물이 망 G의 상속인들의 공유이고, I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로서 I에게 이 사건 대지 및 건물에 대한 처분권한이 없음을 알고도 이를 매수하였으므로, 이 사건 대지 및 건물에 관한 K의 점유는 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이다."라고 재항변하였다.

그러나 위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1995. 11. 22. 원고 청구기각 판결을 하였고, 위 판결은 1996. 9. 24. 그대로 확정되었다(이하 위와 같이 확정된 판결을 '선행 확정판결'이라고 한다).

7) 한편, 목포시 L 대 77㎡는 1997. 10. 23. L 대 67㎡와 O 대 10㎡로 분할되었고, K가 사망하여 처인 피고 B와 아들인 피고 C이 위 각 토지를 공동으로 상속하였다. 피고들은 2001. 7. 25. 위 L 대 67㎡를 제1심 공동피고인 D 주식회사(이하 'D'라고만 한다)에게 매도한 후, 이를 원인으로 하여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01. 10. 26. 접수 제53511호로 D에게 위 L 대 67㎡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그 후 위 L 대 67㎡은 2002. 1. 18.경 목포시 P 대 700㎡에 합병되었다.

8)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7가합20호로, 이 사건 대지 및 건물의 불법점유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청구로 4억 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원고는 위 소송에서 "K는 I의 궁박한 처지를 이용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이고, 이 사건 대지 및 건물에 관한 I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소유권이전등기관계서류를 위조하여 경료된 것으로서 원인 무효의 등기이며, 이에 터잡은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 또한 무효이다. 피고들은 K의 상속인으로서 합병 전 목포시 L 대 67㎡를 불법점유하고 있으므로, Q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부당이득반환으로 4억 원 및 이에 대한

자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위 법원은 "이 사건 매매계약이 불공정한 법률행위이거나 피고들이 무효인 등기에 터잡아 이 사건 대지 및 건물을 불법점유하고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라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17. 6. 1. 그대로 확정되었다(이하 위와 같이 확정된 판결을 '전소 확정판결'이라고 한다).

나.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1) 원고는 2017. 5. 11. 피고들 및 D를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7가합150호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I의 공박, 경술, 무경험에 의하여 이 사건 대지 및 건물 시세의 1/6 가격에 이루어진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이고, 이 사건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 또한 무효이며, 이 사건 대지 및 건물에 관한 K의 점유 또한 타주점유로서 점유취득시효가 적용될 수 없으므로, 피고들은 이 사건 대지 및 건물을 불법점유하고 있다. 따라서 부당이득의 반환으로 피고들은 D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5억 원 및 이에 대한 자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라는 내용의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18. 6. 29.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내용의 제1심판결을 선고하였다.

2) 이에 대하여 원고가 광주고등법원 2018나23352호로 항소하였고, 위 법원은 2018. 12. 7.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내용의 재심대상판결을 선고하였고, 원고는 2018. 12. 12. 재심대상판결 정본을 송달받았다.

3) 이에 대하여 원고가 대법원 2018다304298호로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2019. 3. 28.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을 하였고, 위 판결이 2019. 4. 2. 송달됨으로써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21호증, 을가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들의 피상속인 K는 이 사건 매매계약이 체결되기 1년 전에 이 사건 대지 및 건물을 매수하려고 하였다가 무산된 적이 있었으므로, G의 상속인들이 이를 공동소유하고 있을 뿐 I가 단독으로 이를 처분할 수 없음을 알고 있었다. 따라서 K의 이 사건 대지 및 건물에 대한 점유는 그 성질상

타주점유이다. 또한 I는 이 사건 대지 및 건물을 시가의 1/7 가격에 매도하였으므로, K는 I의 궁박한 상황을 이용하여 이 사건 대지 및 건물을 헐값에 매수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매매계약은 민법 제104조에 위반한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심대상판결은 아래와 같은 잘못으로 원고의 주장 사실을 배척하였으므로, 그 각 해당되는 재심사유가 있다.

① K는 선행 확정판결의 재판절차에서 이 사건 대지 및 건물의 타주점유를 인정하였고, 증인 R은 이 사건 대지 및 건물의 매매가격이 시가에 비해 현저히 낮다고 증언하였다. 그럼에도 재심대상판결은 이를 간과하고 판결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7호의 재심사유가 있다.

② 재심대상판결은 K가 이 사건 대지 및 건물을 타주점유 하였고, 이 사건 매매계약이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누락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재심사유가 있다.

③ 재심대상판결은 자주점유의 법리에 대한 대법원 1997. 8. 21. 선고 95다28625 전원합의체 판결, 동일한 소송물의 범위에 대한 대법원 1989. 3. 28. 선고 88다1936 판결 및 불공정 법률행위의 인정 여부에 관한 대법원 1964. 12. 29. 선고 64다1118 판결 등의 각 기판력에 반하는 판결을 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10호의 재심사유가 있다.

3. 판단

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7호의 재심사유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2항에 의하면, 같은 조 제1항 제7호의 경우에는 처벌받을 행위에 대하여 유죄의 판결이나 과태료부과의 재판이 확정된 때 또는 증거부족 외의 이유로 유죄의 확정판결이나 과태료부과의 확정재판을 할 수 없을 때에만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K, R에 대한 유죄의 판결이나 과태료부과의 재판이 확정되었다거나, 증거부족 외의 이유로 이들에 대한 유죄의 확정판결이나 과태료부과의 확정재판을 할 수 없을 때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재심의 소는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부적법하다.

나.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재심사유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유탈한 때'에 해당하는 재심사유의 존재는 특단의 사유가 없는 한 재심대상판결의 정본을 읽어 봄으로써 알 수 있는 것이므로, 이를 알지 못하였다는 특단의 사유에 대한 주장 입증에 없는 이상 당사자는 재심대상판결의 정본을 송달받을 때에 재심사유의 존재를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러한 경우 재심의 소는 재심사유의 존재를 안 이후로서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내에 제기하여야만 한다(대법원 1993. 12. 14. 선고 93다4379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원고가 2018. 12. 12. 재심대상판결 정본을 송달받았고, 이에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불복하여 상고하였으나 그 상고가 기각되어 2019. 4. 2.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위 인정사실을 앞서 본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2018. 12. 12. 재심사유의 존재를 안 이후로서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된 2019. 4. 2.로부터 30일을 도과한 2019. 12. 12. 비로소 이 사건 재심의 소를 제기한 것은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다.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10호의 재심사유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10호의 재심사유는 재심대상판결의 기판력과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의 기판력과의 충돌을 조정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므로, 그 규정의 '재심을 제기할 판결이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과 저촉되는 때'란,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의 효력이 재심대상판결 당사자에게 미치는 경우로서 양 판결이 저촉되는 때를 말하고,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이 재심대상판결과 내용이 유사한 사건에 관한 것이라고 하여도 당사자들을 달리하여 판결의 기판력이 재심대상판결의 당사자에게 미치지 아니하는 때에는 위 규정의 재심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11. 7. 21. 선고 2011재다19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원고는, 재심대상판결이 자주점유의 법리에 대한 대법원 1997. 8. 21. 선고 95다28625 전원합의체 판결 등의 기판력에 저촉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인용하고 있는 위 판결들은 재심대상판결과 당사자가 서로 달라 그 기판력이 재심대상판결의 당사자인 원고와 피고들에게 미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달리 원고의 주장 및 그 제출의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재심대상판결이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된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오히려 전소 확정판결인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7가합20호는 재심대상판결과 당사자가 동일하고, 소송물 역시 이 사건 대지 및 건물에 대한 피고들의 불법점유를 원인으로 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으로 동일하므로, 재심대상판결은 전소 확정판결에 부합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의 소 중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7호 및 제9호의 재심사유에 관한 부분은 이를 각 각하하고, 같은 항 제10호의 재심사유에 관한 부분은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이나, 주문에서는 재심청구를 기각한다는 취지만을 표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김태현

판사도우람

판사황성욱